

-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- 기술개발(R&D) 지원사업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「기술개발(R&D)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도약기업 수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1월 22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도약기업 기술개발(R&D)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5. 3. 4. ~ 2025. 10. 31. 까지
- 신청자격 : **23년, 24년 지정 도약기업**
- 지원과제 : 6건 내외

※ 지원과제 수는 예산배정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지원규모 : 기업당 연간 1회(도약기업 지정 3년간 총 2회 이내)

구분	세부내용
지원유형 (자유공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기술융합형 : 이(異)업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제품 및 기술개발□ 생산성혁신형 : 현(現) 주력제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□ 신기술·제품 창출형 : 신기술 적용,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기술개발
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90백만원 이내※ 지원금은 공급가액(V.A.T. 제외) 기준
기업부담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도비지원금의 20%(현금+현물) 이상이며, 이중 현금비율은 기업부담금의 50% 이상 계상

- 기술료납부 : 최종평가 이후 성공과제 지원금의 10% 납부 필수
 - 최종 평가결과 성공관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 시, 납부 금액의 40% 감면
 - ※ 자세한 사항은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안내 예정

2 추진내용

- 지원내용
 - 기업제품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한 R&D 지원
 - 기술개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-학-연 연계사업 운영 가능
 - ※ 개발되는 장비 또는 시설의 경우, 신청기업 제조 현장에 직접 적용만 지원되며 타 기업의 제조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 - ※ 본 사업의 결과물을 사업종료 후, 타 기업으로 무단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

○ 추진방식 : 기술개발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

구 분	자 격 조 건
주관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참여기업(관) (선택사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참여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원칙으로 함. 단, 본 과제를 주관하는 도약기업과 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협약 또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않음 □ 참여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특화센터, 연구소, 대학 등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함 - 단, 도외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타당성을 제시해야 함

- ※ 과제 선정 이후,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- ※ 협약 진행 이후, 지원제외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○ 추진절차

절 차	내 용	대 상
사업공고 및 접수	기술개발(R&D) 지원사업 업체 모집 공고	진흥원
▼		
서류심사	지원 요건 충족을 위한 제출 서류 검토	진흥원
▼		
발표평가	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	평가위원
▼		
협약체결	선정업체 발표 후, 협약체결	도약기업 ↔ 진흥원
▼		
런닝메이트(컨설팅)	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업 계획 고도화	도약기업 ↔ 외부전문가
▼		
사업수행	기술개발(R&D) 지원사업 수행	도약기업, 참여기업(관)
▼		
중간점검	사업 추진중 진행현황 등 현장 점검	평가위원, 진흥원
▼		
결과보고	최종 기술개발 수행 결과보고 제출	도약기업
▼		
최종평가 및 정산	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	도약기업 ↔ 진흥원, 회계법인
▼		
기술료 징수 및 사후관리	지원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	진흥원

※ 사업비 교부를 위한 별도 사업비 통장개설 필수

※ 상기 절차 및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3 모집공고 및 접수

○ 공고기간 : 2025. 1. 22.(수) ~ 2025. 2. 12.(수)

○ 접수기간 : 2025. 1. 23.(목) ~ 2025. 2. 12.(수) 16:00까지

○ 접수방법 :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(www.jbhc.or.kr)

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→ 접수 확인 전화 必 (※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)

신청서류 다운로드 : www.jbhc.or.kr

도약기업 → 지원사업신청 → 2025년 도약기업 기술개발(R&D) 지원사업 모집 공고 (23, 24년 지정 도약기업)

○ 문의전화 : (063) 711-2176, free2456@jbba.kr(기업성장팀 선임담당관 강철구)

711-2071, ksw@jbba.kr(기업성장팀 담당관 김소원)

○ 제출서류

연 번	구 비 서 류	비 고
1	도약기업 기술개발(R&D) 지원사업 신청서	서식 1호
2	대면평가 발표자료 PPT(발표시간 7분, 질의응답 8분 내외)	자유양식
3	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
4	민간부담금(현금, 현물) 출자 협약서	서식 3호
5	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※ 본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(관) 참여인력 모두 제출	서식 4호
6	중복지원금지 협약서	서식 5호
7	청렴서약서	서식 6호
8	참여기업(관) 사업자등록증(사본)	필수
9	2022년~2024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증명원 (재무상태표 /손익계산서/현금흐름표/제조원가명세서/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)	필수
10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필수
11	법인 인감증명서(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)	필수
12	4대보험 가입자 명부 (※ 사업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	필수
13	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(도면, 재료비 산출내역, 견적서 등)	필수

-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본 과제에 참여하는 신청기업, 참여기업(관) 참여인력 모두 제출
- 서류 접수 시,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직인 날인
- 모든 견적서는 공고일 내 발급분에 한함(기한 초과 시 재요청될 수 있음)

4 평가 및 선정

○ 평가일정 : 2025. 2월 내(예정)

※ 세부적인 평가일정 및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평가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*상세장소 개별 안내

○ 평가방식 : 대표자 및 과제 총괄책임자 대면평가

-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기업소개 및 사업내용 PPT 발표(발표 7분, 질의 8분)

5 평가항목

구 분	평가항목	평가내용
기술개발 계 획 (50)	기술개발 개요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?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면 질적으로 우수한가?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?
	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?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, 핵심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?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?
	추진체계 및 연구지원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?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?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? 과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, 역할분담은 적절한가?
	목표 및 추진내용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?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?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?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,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?
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(40)	사업화 계획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, 향후 시장을 분석·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적절한가? 개발결과의 실용화·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?
	매출효과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,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? 신규시장 창출,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?
	고용효과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목표 설정이 타당하며,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?
사업비 (10)	사업비 산정 적정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?

6 선정제외 대상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업, 대표자, 과제 책임자 등)가
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부도, 휴/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
- 공고일 현재 주관기업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
 - 4대보험 미가입 시,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
- 신청기업에 既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
-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하여 500% 이상 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. 「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5호, 제17조 제1항」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공고일 기준 동일 과제로 R&D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최종 선정된 경우

7 유의사항

- 신청 서류 접수는 마감일 16: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,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 -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 -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 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4.09.27.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*이 부과됨
- * 제재부가금
- 허위 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받은 지원금의 5배
 - 과다청구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받은 지원금-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 - 목적 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(정해진 목적·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
-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, 지정철회

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
-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라북도 도비지원 R&D사업 공동운영 및 세부지침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사업 참여 기업은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점검과 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. 끝.